

#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住居問題

## The Housing Problem appeared in Chosen Dynasty Chronicles

한 지 현\*  
Han, Ji Hyon

박 선 희\*\*  
Park, Sun Hee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disputed point of housing problem appeared in Chosun Dynasty Chronicles and to consider the change of housing problem appeared in Chronicles according to the times.

The results are :

Housing affairs problem appeared steadily until king Se-chong and increased sporadically under the reign of king Sung-chong, Chung-chong. General housing hardly appeared in the early of Chosun. And it appeared sometimes in the late of Chosun.

Palace problem increased gradually from the early of Chosun. And in the times of king Yonsangun it appeared most highly. Later it decreased gradually, but in the times of king Kwanghaegun it increased suddenly. And it hardly appeared in the late of Chosun.

National disaster problem appeared a little in the early of Chosun but increased gradually in the middle and late of Chosun.

## I.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의 가옥은 그 시대의 정치, 문화, 사상, 생활감정 등이 집약된 가장 기본적인 건축 구현물이다. 조선시대의 주거는 관아나 궁궐, 사찰 등과 같은 일부분의 권위 및 종교건축을 제외하고는 전체 서민 가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왕조의 정치적 책임이 당연히 논의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조선시대의 주거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은 건축의 물리적 측면이었으며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대두된 주거 문제를 다룬 것은 별로 없었으며 특히 왕조실록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은 없었다. 조선시대는 사회적 특성과 주거의 물리적 조건이 오늘날과는 아주 달랐으므로 이러한 배경에서 제기된 당시의 주거 문제 양상도 매우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실증적 사료로써 궁궐을 비롯한 상류가옥 및 일반 백성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제반사항들을 논의한 기록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고찰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왕조실록에 기록된 당시의 주거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쟁점화된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왕조별 분석을 통하여 주거문제가 시대적으로도 변화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무엇보다도 조선왕조실록의 그 방대한 내용안에서 주거에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여 정리한다는 점에서 일차적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고찰의 결과는 조선시대에 제기된 주거의 사회학적 의의를 밝히기 위한 기초자료로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CD-ROM으로 제작된

\* 전북대학교 대학원석사  
\*\*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교수

조선왕조실록<sup>1)</sup>에서 주거 관련 문제를 추출한 852개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왕조별로 총 내용의 변화를 검토하였는데 일수, 면수, 내용의 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각 한 내용의 글을 하나의 문제로 취급하여 고찰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시대별 변화<sup>2)</sup>를 검토하였다.

실록에 나타난 주거 관련 문제를 그 논의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유형화 해 본 결과 첫째, 주거규제의 문제 둘째, 임시 주거의 건립과 철거 문제 셋째, 가옥의 재료와 구조 문제 넷째, 재해 및 풍수와 관련된 주거 문제 다섯째, 집값 및 기타 그리고 여섯째, 궁궐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각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II. 고찰 및 분석

### 1. 실록에 나타난 주거 문제 내용

표 1. 조선왕조실록 목록과 주거문제수

왕 조 명	본실록권수	실록기록 년도	주 거 문제수	CD권수	기타
태조 실록	15권	1392년 7월 ~ 1398년 12월	8	15권	CD-ROM 1집
정종 실록	6권	1398년 12월 ~ 1401년 정월	0	6권	
태종 실록	36권	1401년 정월 ~ 1418년 8월	9	36권	
세종 실록	127권	1418년 8월 ~ 1450년 2월	42	127권	
문종 실록	13권	1450년 2월 ~ 1452년 9월	3	13권	
단종 실록	14권	1452년 5월 ~ 1455년 윤6월	2	14권	
세조 실록	47권	1455년 윤6월 ~ 1468년 9월	15	47권	
예종 실록	8권	1468년 9월 ~ 1469년 1월	1	8권	
성종 실록	297권	1469년 11월 ~ 1494년 12월	63	295권	
연산군 일기	63권	1494년 12월 ~ 1506년 9월	76	63권	
중종 실록	105권	1505년 9월 ~ 1544년 12월	80	105권	
인종 실록	2권	1545년 ~ 1545년	0	2권	
명종 실록	34권	1545년 7월 ~ 1567년 6월	31	34권	
선조 실록	221권	1567년 7월 ~ 1608년 2월	27	221권	
선조 수정 실록	42권	1567년 7월 ~ 1608년 2월	4	50권	
광해군 일기	187권	1608년 2월 ~ 1623년 3월	36	187권	
인조 실록	50권	1623년 3월 ~ 1649년 5월	37	50권	
효종 실록	21권	1649년 5월 ~ 1659년 5월	3	21권	
현종 실록	22권	1659년 5월 ~ 1674년 8월	40	22권	
현종 개수 실록	28권	1659년 5월 ~ 1674년 8월	27	28권	CD-ROM 3집
숙종 실록	65권	1674년 8월 ~ 1720년 2월	69	65권	
경종 실록	15권	1720년 6월 ~ 1724년 9월	6	15권	
경종 수정 실록	5권	1720년 6월 ~ 1724년 9월	1	5권	
영조 실록	127권	1724년 8월 ~ 1776년 3월	55	127권	
정조 실록	54권	1776년 3월 ~ 1800년 6월	53	54권	
순조 실록	34권	1800년 7월 ~ 1834년 1월	136	34권	
헌종 실록	16권	1834년 11월 ~ 1849년 6월	15	16권	
철종 실록	15권	1849년 6월 ~ 1863년 12월	13	15권	

## 1) 주거규제의 문제

## 가. 가사제한 (家舍制限)

가사제한을 다룬 내용은 총 4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는 성종때 17건이었고, 중종때 11건이 발생해 조선 중기에 높게 발생했다. 그러다가 경종이후에는 중단되었다.

조선때에 가사제한을 처음 논의하게 된 것은 세종 12년이었다.<sup>3)</sup> 세종 12년은 한양으로 천도한 지 30여 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서울의 도시 건설을 일단락 지은 다음이어서 그 가사들이 사치의 경향에 흐르게 되므로 세종은 가사제한법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세종 13년 정월 정묘조에 가사제한법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된다. 그러나 특수층에서는 간(間)이 두기둥 사이, 네기둥 사이 안의 면적인데, 기둥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정해진 바 없어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sup>4)</sup> 이 불비(不備)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종 22년에는 제 1차 법령에 보(裸), 도리(道里), 주(柱) 등 부재의 길이와 누(樓)의 간수를 규정하여 내용을 제정 공포되었다.<sup>5)</sup> 이후 세종 31년 제 2차로 제정된 법조문 중에 규정된 수치가 실제 구조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제 3차 법조문이 개정되었다.<sup>6)</sup>

성종은 경국대전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규제 불이행자에게는 ‘과세조가자는 추국하여 죄주고 그 집을 헐도록 하라(성종6년)’고 까지 하였다. 그러나 성종 2년 사헌부 대사헌 한치형 등의 상소에

‘서인이나 노예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전재(錢財)가 있으면 자기의 신분을 헤아리지 않고 제사(第舍)를 다투어 일으키고, 집의 칸수로 보나 장식(裝飾)으로 보나 향사부(卿士夫)보다 훌륭한 집을 짓고 사니...이를 위반하는 자는 율(律)에 의해 논단하고 새로 지은 가사(家舍)는 물론 전에 지었던 것도 모두 철거하여 사치풍습을 두절케 하라’ <『成宗實錄』, 성종 2년 6월 8일 己酉條.>

라고 실려있다. 이것을 보면 왕족 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주거의 규제를 어기는 일이 종종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종은 제 4차로 법령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으나 별로 실효성

이 없었는데 성종 자신이 계성군의 집을 지어 주면서 가사 정제를 어긴다하여 탄핵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다(성종2, 6, 23, 24년). 성종 23년에는 ‘산 것이 모두 낡은 집이니, 부득이 고쳐 지어야 한다. 내가 굉장히 큰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진실로 평상인이 거처하는 것과는 같게 하지는 말도록 하였다’ <『成宗實錄』, 성종 23년 4월 21일 辛酉條.>

라고 하여 낡고 오래된 집의 보수 중 위반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경국대전에 명한 주거의 법적 규제는 오히려 왕실에서부터 기강이 서있지 않음으로서 정치적으로 주거의 법적 제재를 실행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사대부나 서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중종 10년(甲子條)에는 규제를 어긴 집의 대상이 280여채나 되어 극심하지 않은 집들만 처벌할 것을 상소하고 있고 더욱이 중종 18년에는 혜정옹주의 80칸 집에 대하여 왕 스스로 필요한 이유를 들어 개정에 불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은 집의 규제가 당시의 사회경제적으로 본 도덕적 규범의 성격이 강하면서 신분상의 권위적 위치를 사회적으로 용납받으려는 모순된 사고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가대(家臺)의 제한과 매매

집터의 크기에 대한 규제인 가대제한 문제는 총 27건으로 중종때 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선 전·중기에 걸쳐 골고루 나타났다. 가대제한 문제의 대부분은 왕자녀의 집터를 넓히기 위해 인가를 철거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가대제한에 대한 내용은 태조때 처음 나타났다. 이 후 서울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50여 년이 지난 세조 때에는 대지의 지급량을 더욱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종 원년에 이룩된 경국대전 호전 급조 가지조(經國大典 戶典 給造 家地條)에는 가대의 크기를 아주 소규모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후에도 특수 층에서는 법에서 정한 가대보다 더 큰 가대를 이름으로써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왕자·공주·군의 가대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집터를 넓히기 위해 인근의 인가를 침탈하기도 하여 원망이 잦았다.

‘제군(諸君)과 부마(駙馬)의 제택이…오허려 부족하게 여겨 인근의 인가(人家)를 갖은 방법으로 침탈하고 능멸하여 안주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집을 억지로 팔게 합니다. 그리고는 본집을 다 지어놓고도…그러니 그 폐단이 심한 것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 『中宗實錄』, 중종 29년 6월 28일 癸亥條.>

즉, 왕족의 권세를 빌어 집에 대한 권위적 소유의 행태가 나타나 문제가 되었음을 보인다. 또한 세종28년(甲戌條)에 효령대군이 이웃 민가를 사들인 일, 중종30년(丙申條)에 응주를 위해 평민 6인의 집을 억지 매매한 일들이 민중의 원성을 자아내 비록 반 강제적이긴 하나 대지에 대한 매매가 법적으로 성립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 호전에

“모든 전지와 가옥에 관한 소송은 5년을 경과한 사건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남의 전택을 도매한 자, 계류 중인 전택의 소송사건, 부모의 유산인 병경을 기화로 하여 남의 전택을 영구히 점유하는 자,…… 전지 가옥의 매매는 십오일이 지나면 변경하지 못하며 모두 매매가 있을 후 백일 이내에 관에 신고하여 관의 증서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여 전지와 가옥에 대한 소송은 5년이 경과되면 무효이며 매매에 대한 법적 시효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주거 색채와 장식의 제한

장식 제한은 총 16건이 나타났는데, 중종때 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선 전기에 꾸준히 보이다가 조선 중기에 가서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다가 경종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단청 금지 기록의 효시는 세종 11년 정월에 나타난다. 이날 공조(工曹)에서 교지를 전하기를 '지금부터 궁궐 외의 공사옥우(公私屋宇)에서 주칠(朱漆)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고 이후 세조 11년 이를 위반한 가옥은 참의로서 다스렸다.<sup>8)</sup> 또 예종 원년의 경국대전 형전 금제에는 사찰외에 진채를 사용하는 자에게 장(杖) 80을 벌하게 되어 있다. 이는 계속되어 조선시대 말의 대전회통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지켜지고 있었다.

단청에 대한 문제는 조선시대에 꾸준히 나타났다.<sup>9)</sup> 성종때 박승종의 집은 단청을 하여 말썽이 되었고, 중종조에 이르러서는 잘 준용되지 못했다. 중종 8년 10월에는 좌의정 송일이 집에 단청을 하자 사치스럽고 화려하여 과제(過制)가 되니 재상의 자리를 철회할 것을 청하는 일도 있었다.<sup>10)</sup> 명종때는 영의정까지 된 심언원의 첩이 굴도리에 단청까지 하여 말썽이 되자 씻어낸 일도 있었다. 붉은 칠(朱漆) 외의 금제(禁制)로는 화공(花枱)과 숙석(熟石)의 규제가 있었다. 세종 13년 정월에 살림집에서의 화공초공과 숙석의 사용을 금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기록도 실록에서 보인다. 세종 14년에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진사(進士) 신호창이…호부(豪富)함을 자랑하면서 가옥(家屋)을 짓고 극도로 사치하여 지(池), 대(臺), 누(樓), 각(閣)을 연달아 지어 집은 간수가 거의 1백 여 채나 되며, 주춧돌, 섬돌, 원장(垣牆)을 모두 다듬은 돌을 사용하여 궁전에 비길 만하니, 분수에 지나치고 예절에 어긋났는데…” < 『世宗實錄』, 세종 14년 8월 2일 戊子條.>

하여 문제가 되었다.

중종 7년 윤 5월에도 사족(士族)의 집에 화공초공이 극도로 화려하니 집주인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자고 하니 왕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것으로 보아 사가(私家)에서 더러 사용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숙석은 주초석 이외에는 사용을 금하였으니 계석이나 댓돌 등에서 일체 잘 다듬은 돌은 사용치 못하였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도 또한 잘 지켜지지 않아 기단과 계단에도 장대석들을 사용하였다. 특히 서울의 저택에서 그 사례들이 많이 남아 있다.<sup>11)</sup> 이렇듯이 집의 치장과 구성재료에 있어서 그 정도가 지나치면 임금이 직접 문초한 경우도 있었다. 국법에 명시된 집의 제도가 아니라도 귀하고 한정된 재료의 보호와 물력의 낭비 그리고 신분에 맞지 않는 지나친 사치 등을 규제하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사회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사치하는 풍습은 크게 퍼져 가사만 크게 짓고 사치스럽게 하는 것 외에도 음식과 잔치에서

도 잘 나타나 재물과 곡식을 허비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다.

## 2) 임시 주거의 건립과 가옥 철거

### 가. 가가(假家)

가가는 임시로 짓는 집을 말한다. 가가의 시초는 연산군 때이다. 왕은 만년으로 내려갈수록 유흥에 잠기어 경복궁 후원 경희루를 중심으로 유흥장을 만들었다. 일시에 삼천명의 궁녀를 수용할 집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생각해 낸 것이 판자집(假家)이다.<sup>12)</sup> 이렇게 시작한 가가는 짓기 쉽고 간편하여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였는데 중종 11년(壬戌條)에

“도성 안의 냇가와 길 옆에 허가 문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여 집을 짓는 일이 많습니다. 냇가와 길 옆에 지은 인가가 3백 60여호나 된다…”

또한 정조 20년경의 거리 풍경을 체제공의 상소에서 보면

‘길 옆에 가가(假家)를 짓고 먼저 그 땅을 점령하오, 몇 해 동안 가가(假家)에서 살면서 관에서 아무 소리 없으면 먼저 그들은 가가(假家)안에 온돌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소. 그 다음에는 판자집에 흙으로 벽을 만들고 어엿한 집을 짓게 되오. 우리 나라 법에는 가가(假家)가 금법이 아니오. 이러한 까닭에 곧은 길이 좁아지고 이리저리 비뚤어져가고 있소.’ <이상옥, 앞의 책, 120-121쪽.>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큰길거리나 뒷골목에 처음에는 임시로 집을 짓고 살다가 눈치보아 완전한 집을 만드는 일이 조선 후기에 많았다. 이렇게 발달된 가가는 조선시대 중·후기에 꾸준히 문제로 등장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가가문제는 모두 18건으로 선조·광해군 때 가장 많았고(4건), 숙종 3건, 성종 2건 등으로 조선 중·후기에 많이 나타났다. 가가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했던 선조때에는 임진왜란으로 인한 임시 궁궐 문제가 등장해서였으며(3건), 종묘에 제사를 올릴 때 필요한 왕·왕세자의 임시 거처때문으로 나타났다. 광해군때에는 가가 조성 문제가 3건 있었고, 임시 가옥을 덮는 교초의 운반문제가 1건 있었다. 그 다음으로 가가 문제가 높았던 시기는 숙종때인데, 이때의 가가 문제는 3건 모두 가가의 화재

문제이다.<sup>13)</sup> 이외에도 성종때 1건<sup>14)</sup>, 철종때 1건<sup>15)</sup>의 가가 화재가 발생했다. 이외에 상(喪)이 있을때 가가를 지은 흔적도 실록에서 보이는데 이때에 구들까지 놓아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다. 인조 4년 4월 간원이 아뢰기를

‘국상의 발인때…능소(陵所)의 머무는 곳에다가 가가(假家)를 세웠던 일은 일찍이 없었으며… 그런데 이번 예장 때는 회장(會葬)하는 인원에 대하여 그들이 들어가 있을 곳에 모두 가가(假家)를 짓고 심지어는 방을 만들어 구들까지 놓고 있으며 또 각 고을로 하여금 나누어 접대를 맡게 하여 민공(民工)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仁祖實錄』, 인조 4년 4월 16일 戊子條.>

라는 기록도 보인다. 그 외에도 각 군이나 현의 업무를 위하여 가가를 세웠던 기록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 이와같이 가가는 일반 서민의 경우는 집 없는 서민의 초기 가옥으로 왕실에서는 행사나 행정 업무를 위한 임시 거처로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가는 조선 후기에 사치문제까지 대두시켰다. 영조 9년 9월에 대사헌 조명익과 대사간 조석명 등이 가가가 지나치게 사치한다 하여 헌부(憲府) 관원을 엄중히 추구하라는 분부를 내렸다는 기록이 보인다.<sup>16)</sup>

### 나. 인가 철거

인가의 철거가 많이 발생한 시기는 연산군과 선조때로서 연산군 때는 질병 예방이나 행정 업무 등으로 인가 철거 경우<sup>17)</sup>가 발생하였으며 선조때에는 임진왜란과 연관돼 인가훼철이 2건<sup>18)</sup>, 기타 인가철거가 1건<sup>19)</sup> 있었다. 그 외 현종때에는 부모 개장(改葬)을 위해 인가를 훼손시킨 일<sup>20)</sup>, 화소(火巢)로 정해진 한계 안의 인가 철거 문제<sup>21)</sup> 등이 있었다. 이외에 실록에 실린 인가 철거 내용을 보면 사장(射場)이 너무 협소해 인가를 철거한 경우<sup>22)</sup>, 한강 노변의 인가철거<sup>23)</sup>, 살곶이 마장(馬場)에 있는 인가를 훼철한 경우<sup>24)</sup>, 화소안의 인가를 철거하는 문제<sup>25)</sup>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철거된 인가는 부득이 한 경우였고 그 외의 인가는 동의 없이 쉽게 철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현종14년, 영조10년, 정조13년).

### 3) 가옥의 재료와 구조

## 가. 목재

재목문제는 광해군때 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태종·정조때 1건이 나타났다.

광해군때에 나타난 재목문제는 재목 폐단에 관한 문제가 4건인데, 자재 상납할 때 생긴 폐단<sup>26)</sup>과 재목을 마구 사용하여 생긴 폐단<sup>27)</sup> 등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 가옥에 많이 쓰인 소나무도 섬과 같은 곳에서는 벌채를 금하였고(광해군14년) 정조때에는 금송(禁松)과 같은 귀한 유형도 제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정조9년).

## 나. 온돌

온돌에 관한 주거문제는 총 5건이 나타났으며, 성종 2건, 명종·현종<sup>28)</sup> 1건 등이 있었다.

온돌문제는 온돌 관련 화재문제, 온돌 뿔감문제 등이 나타났다. 화재문제는 성종 1건<sup>29)</sup>, 명종 1건<sup>30)</sup>이 있었다. 성종 6년 2월에는 잠실(蠶室)을 모두 온돌로 만들어서 날마다 소용되는 뿔나무와 불피우는 숯의 수량이 매우 많이 드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sup>31)</sup> 현종때에도 뿔나무와 숯을 공급하는 일의 어려움을 상소하는 일이 있었다.<sup>32)</sup>

## 다. 담장

담장문제는 성종·중종 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영조 1건이 있었다.

성종때에는 군자감의 분감(分監), 강감(江監)에 간각(間閣)과 담장을 쌓는 일<sup>33)</sup>과 계성군의 담장을 쌓도록 할양해 준 서학의 땅을 돌려줄 것을 건의하는 문제가 있었다.<sup>34)</sup> 중종때에는 세자 친영때 연(輦)이 겨우 들 수 있게 인가를 철회한 기록<sup>35)</sup>과 사장(射場)담을 물려 쌓는 일<sup>36)</sup> 등 2건이 있었다.

영조때에는 사묘(私廟)에 동가(動駕)할 때 군병이 호위할 곳의 민가 담장을 헐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다.<sup>37)</sup>

## 4) 재해 및 풍수

재해 중 우선 화재 피해는 총 208건으로 조선전기 세종·성종때 산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조선중기에는 점차 감소하다가 조선 후기 현종때 증가했다.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했던 때는 순조때로 54건이었고, 숙종 29건, 정조 20건 등 조선후기에 많이 발생했다. 전체적인 화재 피해를 살펴보면

화재피해와 화재예방으로 나눌 수 있다. 화재 피해는 단순한 화재로 집이 소실된 경우, 실화(失火), 산불에 의한 피해로 나눌 수 있으며, 화재예방은 별와요와 화재로 인한 인가철폐로 나누어 보았다.

무너진 집은 철종 5건으로 제일 높았고, 순조·정조 2건, 성종·현종 1건이 발생했다. 무너진 집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보면

‘단천 등 6읍(邑)의 퇴압한 민가 3백 80호와 압사한 인명 5명과 파쇄된 선척 1백 1척이 발생했음을 치계하니.....’ < 『哲宗實錄』, 철종 11년 8월 12일 癸酉條 >

라고 나타나 재해로 인한 가옥의 수많은 피해를 알 수 있다. 한편 수재피해도 많았는데 순조때에 76건이나 논의되었으며 조선 전후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또한 바람<sup>38)</sup>이나 해일의 피해<sup>39)</sup>, 지진<sup>40)</sup>, 눈과 우박의 피해 등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신포(身布), 환곡(還穀)을 탕감하는 절차와 집을 지어 안접(安接)시킬 방도를 묘당으로 하여금 강구하여 계문(啓聞)하게 하라’ < 『哲宗實錄』, 철종 11년 7월 28일 庚申條 >

하여 재해로 인한 주거문제를 세금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백성을 돕게하는 정책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왜인의 침략으로 인한 가옥소실이 4건이 나타나 인적 재해문제도 심각하였다’ < 『太宗實錄』, 태종 4년 2월 22일 癸巳條 >

한편 풍수 문제는 현종 3건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광해군·영조 2건, 태종·문종·성종·명종·인조·숙종·정조 1건씩으로 조선전후기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발생했다.

풍수 관련은 한양천도 등 궁터와 관련된 것, 풍수설 때문에 인가를 철폐한 경우, 장지문제 등으로 크게 나누었다. 궁터에 관련된 풍수 문제는 조선 초기 한양 천도때와 임란으로 파괴되었던 한양을 다시 재건축하는 광해군때 많이 발생했다. 풍수설때문에 인가를 철폐하는 경우는 조선 초·중기(문종·명종)에 있었고, 장지와 관련된 풍수문제는 조선 후기(인조·숙종·영조)때 있었다.

## 5) 집값 및 기타

집값에 대한 문제는 영조 때 2건<sup>41)</sup> 있었다.

조선시대 집값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개인의 가옥에 대한 적당한 값이 형성되었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우물문제가 연산군때 2건 발생했는데 모두 우물을 옮기는 문제가 있었으며 그 외에 용성(甕城), 대창(大倉), 문설치, 참호, 행랑 등의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 6) 궁궐 문제

궁궐에 관련 주거문제는 크게 궁궐 수리와 궁궐 주위의 인가철거, 왕자녀의 집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 중 무엇보다도 조선의 중추 핵심이며 왕권을 상징하는 궁궐 자체에 대한 논의 기록이 가장 많았다.

##### 가. 궁궐 수리

궁궐 자체 수리는 광해군때 13건으로 가장 많으며, 연산군 3건, 명종·선조 2건, 태조·세종·인조·효종·영조·정조 1건씩 전후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궁궐수리가 제일 높았던 시기는 광해군때로 13건이 나타났는데, 이 시기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파괴된 궁궐수리의 복구로 인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① 경복궁

경복궁은 세조 2년 자수궁에 불이 난 것을 시작으로 임진왜란까지 4차례의 화재가 발생해 수차례의 수리를 했다. 이렇게 화재로 소실된 경복궁은 세조 7년 수리도감을 설치해 경복궁을 수축(修葺)하도록 한 것<sup>42)</sup>을 시작으로 고종 2년 4월까지 꾸준히 재건됐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종때 재건된 궁궐의 모습이다.

##### ② 창덕궁

궁궐로서의 면모를 갖춘 창덕궁은 임진왜란까지 별 재난이 없었고 큰 건물 신축도 없었다.

임진왜란때 불에 타 폐허가 되자 광해군때 완전히 재건하였다. 그후 인조반정때의 대화재가 발생해 인정전만 남는 수난을 당했다.<sup>43)</sup> 인조 반정때에 소실된 창덕궁의 전각은 인조 25년에 들어와 외전의 인정전 동월랑과 승정원, 선정전 등 3백 14칸과 내전의 대조전, 회정당, 보경당 등 주변의 행각, 월랑 등 4백 21칸 등 도합 7백 35칸이 재건되었다.<sup>44)</sup> 그후 순조 3년에 정전(正殿)인 인정전이

다시 불에 타서 다음해 12월에 중건이 끝났는데<sup>45)</sup> 지금의 건물은 이때에 중건된 모습으로 국보 225호로 지정돼 있다.<sup>46)</sup>

##### ③ 창경궁

창경궁은 임진왜란때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임진왜란으로 전소<sup>47)</sup>되었으며, 광해군 8년에 명정전 재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광해군때 재건하면서 태관들의 공사중지요청이 잇따랐고 여러 차례의 옥사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또 궁궐의 정전인 명정전이 다른 궁궐의 정전과 마찬가지로 남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이때의 실록의 내용을 보면

‘명정전은 지세가 협착하고 뜰이 넓지 못하여 다른 궁에 비교하면 겨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그 터를 나누고 대정(大庭)을 쪼개어 명정전과 나란히 동쪽을 향해 짓는다면 이 문정전이 경전이 되므로 사의(事宜)에 어긋납니다. 조종조에서 문정전을 명정전 옆에 세울 때 방향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네모 기둥을 사용하여 하나의 작은 전(殿)을 만들어 별도로 처소로 삼았는데 이는 거처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전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된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자 하시므로 그 불가함을 아뢰입니다.’ <『광해군 일기』, 광해군 8년 2월 18일 己未條>

라고 적고 있다. 이런 옥신각신 끝에 공사는 지연되고 시공한지 1년 6개월 만인 광해군 8년 11월에 공역이 마쳐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 광해군은 지관 이의신의 말을 들어 연산군과 단종이 폐출된 창경궁을 기피하고 경운궁에 이어하면서 인왕산 아래 새 궁궐을 지을 것을 구상하게 된다.<sup>48)</sup>

창경궁은 재건된 지 7년도 못되어 인조반정때 저승전이 불에 타고 인조 2년 2월에는 이괄의 난으로 명정전과 홍화문만을 남기고 대부분의 전각이 불에 타버렸다.<sup>49)</sup> 이에 인조 25년 창경궁을 수리하도록 명했다.<sup>50)</sup> 영조 32년 명정전 남쪽의 저승전 낙선당에서 발생한 화재는 청음정·경극당·양생당·취선당·승경당 등 명정전 남쪽에 있던 전각과 낙선재 주위에 있던 전각들을 모두 불태우고 말았다.<sup>51)</sup> 순조 30년에는 또다시 창경궁

에 큰 불이 일어났다. 세자의 빈궁으로 사용하던 환경전에서 불이 일어나 함인정·공목당·경춘전·승문당·영춘전·오행각·빈양문 등이 연소됐다. 창경궁의 재건은 순조 32년 8월에 착공<sup>52)</sup>하여 34년 8월에 영건이 끝났다.<sup>53)</sup> 그뒤 1977년 서울특별시에서 서울대공원 계획이 추진되어 창경궁을 본래의 모습으로 재정비해서 현재의 창경궁 모습으로 복원되었다.<sup>54)</sup>

#### ④ 경희궁

경희궁은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에 의해서 창건되었다. 경희궁의 공역은 광해군 9년 8월에 개기시역하기로 하여 궁이 들어갈 지역의 민가들을 철거케 하고 경기·전라·충청·황해·강원도 등지에서 자재를 모았으나 그해에는 축장공사만을 하고 본격적인 영건은 광해군 10년 봄부터 시작했다.<sup>55)</sup> 한편 광해군이 인경궁과 경덕궁을 창건하면서 재정적으로 무리를 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었다. 인조 즉위 후에 경희궁은 왕궁으로써의 구실을 확실히 해냈다. 인조반정으로 창덕궁이 소실되고 그 이듬해에는 창경궁마저 이괄의 난으로 피해를 입자 인조는 인목대비를 받들여 경희궁으로 이어하였다. 그 후에도 3백년동안 경희궁은 서궐로써 궁궐의 역사를 다했다.<sup>56)</sup>

#### ⑤ 덕수궁

덕수궁은 원래 정릉동 월산대군의 구택(舊宅)으로 건립되었다.<sup>57)</sup> 덕수궁은 고종때까지 큰 피해가 없었다가 고종 41년 4월 함녕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중화전·즉조당·석어당·경효전·흠문각 등이 탔다. 그해에 중화전을 제외한 건물을 다시 중건하였고, 2년 뒤에 중화전이 준공되었다.<sup>58)</sup>

#### 나. 궁궐주위 인가철거

궁궐주위의 인가철거는 연산군때 5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왕인 중종 10건, 광해군 4건, 선조 3건, 세조·성종 2건, 명종·선수 1건 등으로 조선 전기에 높게 나타났다. 궁궐주위의 인가철거는 첫째 궁성 백자(百尺)안의 인가철거, 둘째 궁궐주위 산맥을 파서 지은 집 등의 철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궁궐 백자안의 인가철거는 45건으로 주로 연산군때 나타났고, 궁궐주위 산맥

을 파서 지은 집 철거는 7건이 나타났다. 궁성 백자안 인가철거는 45건이 있었고, 주로 연산군때 나타났다. 궁궐백자안 인가철거에 대한 논의는 연산군 3년에 처음 있었는데 실록에는

‘궁궐 담밖 백자안에는 민가(民家)를 짓지 못하게 하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다. 지금 창덕궁 밖의 정업원 성균관 등지에는 백자 한계안에 인가(人家)가 많으니 법에 어그러진 것 같다. 공지(空地)를 주어 가을이 되면 점차 철거하게 하라’ <『연산군 일기』, 연산군 3년 5월 18일 己未條·연산군 9년 11월 5일 戊辰條>

라고 실려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인가철거를 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보인다.

연산군때는 인가철거를 위해 천무청(遷撫廳)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인가철거에 들어갔으며, 연산군 11년 8월에는 금지구역의 한계를 넓힌 내용도 보인다.<sup>59)</sup> 이렇게 서울의 인가를 철거한 것이 반이나 되고, 금표(禁標)를 설치한 곳에는 가시를 설치해 사람이 궁궐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여 동서의 길을 막았다.<sup>60)</sup>

궁궐을 누르고 있는 산맥을 파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논의는 세조·연산군·중종때 2건, 명종때 1건 등 총 7건이 있었다.

#### 다. 왕자녀의 집 문제

왕자녀와 같은 왕족의 집문제는 인조 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종 3건, 중종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왕자녀의 집을 위한 재목 조달이 어려울 때는 인가의 집을 매입하여 그 재목으로도 지었음이 나타났다(중종17년). 인조때의 문제는 백성이 궁할 때 대군의 가옥건축을 하는 것은 시기에 거스린다고 하여 그만 둘 것을 청하는 문제였으나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았다.

## 2. 주거문제의 시대적 변화

### 1) 왕조별 주거 문제의 추이

본 연구에서 주거관련 총 문제수의 분석에 사용한 내용은 852개로 이를 왕조별로 구분하여 왕조별 내용분포 상황을 <표 2>에 제시했다. 왕조별 가장 많이 발생한 때는 순조 때(136개)였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화재와 수재로 인한 자연 재해



가 압도적으로 많아 불행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중종(80개), 연산군(76개), 숙종(69), 성종(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종 때에는 자연재해와 가사문제가, 연산군 때에는 궁궐수리와 자연재해가, 숙종 때에는 자연재해, 가사제한이, 그리고 성종 때에는 자연재해, 가사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정종·인종때는 문제가 1건도 나타나지 않은데 비하여 순조때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 문제수가 10건 미만인 왕조는 태조·정종·태종·문종·단종·예종·인종·선조·효종·경종 6) 등 재임기간이 짧은 왕들이며 주로 조선 전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태조·정종·태종·문종·단종·예종) 총 문제수가 10건 이상 40건 미만인 시기는 세조·명종·선조·광해군·인조·현개·헌종·철종 등으로 조선 중기에 많이 나타났다. 총 문제수 40건 이상인 왕조는 세종·성종·연산군·중종·현종·숙종·영조·정조·순조 등으로 조선중후기에 많이 발생했다.

즉 조선 전기에 가까울수록 주거 문제수가 적었고,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급격히 많아졌다가 조선 말기 현종·철종시대에는 조선 왕조의 쇠퇴와 함께 문제수가 적어졌다.

2) 왕조별 주거 문제 내용의 변화

주거 문제 관련 내용의 852개를 통하여 내용의 변화를 검토하였다.<그림 1 참조>

먼저 가사 문제는 세종까지 꾸준히 나타나다가 성종·중종때 산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후 조선 후기 현종·숙종때 약간의 증가를 보이다가 경종·영조때에는 일시 중단되었다가 정조때 다시 발생했고, 다시 순종·헌종·철종 때에는 중단되었다. 주거 규제를 제외한 주거의 전체적 문제는 전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가 조선 중기에 많이 발생하였고, 조선 후기에도 간간히 나타났다.

궁궐 문제는 조선 초기부터 차츰 증가를 보이다가 연산군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후에 다시 감소를 보이다가 광해군 때 갑자기 증가를 보이다가 조선 후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산군 때 궁궐 인가의 철거 문제가 높았던 것과 광해군때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궁궐을 수리하는 문제가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II. 결 론

실록에 나타난 주거문제는 크게 주거의 규제, 임시 주거의 건립과 가옥 철거, 집의 재료와 구조, 재해로 인한 주거 문제 등과 궁궐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에 대한 규제로서 특히 가사의 크기에 대한 문제였다. 이것은 당시의 가옥이 목구조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목재의 양은 한정된 천연 재료인만큼 나라의 전체적 수급상황에서 볼 때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대 제한이나 장식제한 역시 조선이 지닌 유교적 청빈 사상을 배경으로 하되 한정된 물자 절약과 검약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단청이나 주칠을 통한 주거의 미적 구성에 대한 표현 욕구가 너무나 규제된 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당시의 도료가 매우 귀하고 비싼 것이었다면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에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한양과 같은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가 건립 등은 산업화 이후의 현상과도 공통점이 있었으며 의외로 가가 건립이 여러 부분에 활용되고 많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무질서한 인가로 인한 문제와 대궐과 관련된 인가 철거는 골치 아픈 주거 문제이었음이 나타났다.

한편 서민 주거에 대한 사회의 전체적 문제는 재해에 따른 피해를 해결하는 논의가 두드러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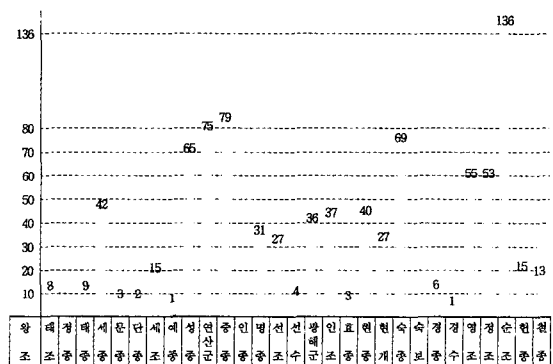


그림 1. 왕조별 주거 문제의 논의 수

표 2. 왕조별 주거 문제의 내용과 수

시대구분	왕조명	분 류																		총계
		주거규제			주거전립/철거		재료/구조			주거재해/풍수					집값/기타		궁궐			
		가사제한	가대제한	장식제한	가가	인가철거	재목	은돌	담장	화재	수재	기타기후	무너진집	왜인	풍수	집값	기타	수리	인가	
조선전기	태조			1					4	2				8			2			8
	정종																			0
	태종						1			5			1	1		1			9	
	세종	4	1	3					18	10	2			2		1	1		42	
	문종			1						1				1					3	
	단종								1	1									2	
	세조	1							7	4			1					2	15	
	예종								1										1	
	성종	17	5		2	2		2	2	19	5		1		1		2	2	3	63
	연산군	1	3			3				3	5						2	3	56	76
	중종	11	7	7	1	1			2	8	24	5		3				10	1	80
	인종																			0
	명종					1		1		3	20				1		2	2	1	31
선조	1			4	3					13	1						2	3	27	
선수										2			1					1	4	
중기	광해군		1		4		4		4	2	2			2			13	4	36	
	인조	5		3	1				2	17	3			1			1		4	37
	효종	1								1							1		3	
	현종	2	3			2		1	9	17	3			3					40	
	현개	1	4			1		1	5	12	3								27	
	숙종	2	2	1	3					29	28	2		1	1				69	
	경종									3	3								6	
	경수											1							1	
후기	영조				1	1		1	16	24	6			2	2	1	1		55	
	정조		1		1	1	1		20	23	2	2		1			1		53	
	순조								54	76	4	2							136	
	헌종									13	1	1							15	
	철종				1					2	5		5						13	
총계	46	27	16	18	15	6	5	2	208	313	35	11	7	16	5	9	26	79	8	852

나타나 인위적 대비가 미약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대지나 가옥의 매매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잘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궁궐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인재와 재해로 인한 궁궐의 수리나 재건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왕조별로는 순조 때에 재해로 인한 주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성종, 연산군, 중종대의

삼대 왕조가 이어진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주거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퍼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왕조실록 전반적으로 나타난 주거 문제는 집이 갖는 의미나 역할이 집단 체제 하에서의 신분을 표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였다는 것과 주어진 역사적, 자연적 조건에 순응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흔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주

- 1)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역대 임금의 단위로 하여 편년체(編年體)로 엮은 역사책으로, 태조(太祖)로부터 철종(哲宗)까지 25대 472년 간의 실록 총 4893권, 888책의 원본.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남아있다. 조선왕조실록 중 노산군(魯山君·端宗)·연산군(燕山君)·광해군(光海君) 시대의 것은 실록이라 하지 아니하고 《일기(日記)》라고 하였는데, 그 임금들은 모두 폐위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노산군(魯山君)은 폐위된 지 2백 여년만인 숙종(肅宗)때 복위되어 단종(端宗)이란 묘호를 올렸기로, 이때 이후 《노산군 일기(魯山君 日記)》는 《단종실록(端宗實錄)》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선조실록(宣祖實錄)》《현종실록(顯宗實錄)》과 《경종실록(景宗實錄)》은 각각 두 종류씩 있다. 당쟁이후의 실록은 집권당이 유리하게 기록되었다 하여 반대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를 수정하여 다른 실록을 편찬하는 예가 종종 있었는데,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과 《경종수정실록(景宗修正實錄)》 등이 그것이다.
- 2) 윤장섭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조선 초기는 임진왜란(1592년)까지의 2백년간으로 조선중기는 1592년부터 경종말년(1724년)까지 조선후기는 영조 원년(1725년)부터 순종(1910년)까지로 구분하였다(윤장섭(1984), “한국 건축사”, 동명사, 199-203쪽).
- 3) “世宗實錄”, 세종 12년 12월 26일 壬辰條.
- 4) 대한건축학회편(1996). 한국건축사. 기문당. 499-500쪽.
- 5) “世宗實錄”, 세종 22년 7월 27일 丁卯條.
- 6) “世宗實錄”, 세종 31년 1월 26일 丁未條.
- 7) “太祖實錄”, 태조 4년 정월 14일 己酉條.
- 8) “世宗實錄”, 세종 11년 9월 8일 辛亥條.
- 9) “中宗實錄”, 중종 8년 10월 19일 癸丑條·중종 13년 4월 1일 己未條.
- 10) “中宗實錄”, 중종 8년 10월 19일 癸丑條·중종 13년 4월 1일 己巳條.
- 11) 대한건축학회편. 앞의 책. 499-501쪽.
- 12) 이상옥(1972). 가가와 판자집. 주택 13(2), 118-119쪽.
- 13) “肅宗實錄”, 숙종 원년 10월 21일 辛亥條·숙종 18년 2월 27일 丁未條·숙종 43년 3월 16일 辛未條.
- 14) “成宗實錄”, 성종 15년 4월 29일 乙酉條.
- 15) “哲宗實錄”, 철종 8년 10월 15일 壬戌條.
- 16) “英祖實錄”, 영조 9년 9월 11일 己丑條.
- 17) “연산군 일기”, 연산군 6년 2월 6일 庚寅條·연산군 10년 5월 16일 乙巳條·연산군 11년 11월 1일 壬午條.
- 18) “宣祖實錄”, 선조 27년 9월 26일 辛丑條·선조 30년 9월 27일 甲寅條.
- 19) “宣祖實錄”, 선조 25년 4월 30일 己未條.
- 20) “顯宗實錄”, 현종 2년 9월 7일 癸未條.
- 21) “顯宗實錄”, 현종 14년 9월 4일 庚午條·“顯宗改修實錄”, 현종 14년 9월 4일 庚午條.
- 22) “中宗實錄”, 중종 23년 3월 26일 丁酉條.
- 23) “明宗實錄”, 명종 18년 5월 4일 辛巳條.
- 24) “英祖實錄”, 영조 10년 6월 11일 乙卯條.
- 25) “正祖實錄”, 정조 13년 8월 2일 乙卯條.
- 26) “광해군 일기”, 광해군 10년 5월 26일 癸丑條.
- 27) “광해군 일기”, 광해군 14년 3월 6일 壬寅條·광해군 8년 8월 5일 癸卯條·광해군 9년 2월 3일 戊戌條.
- 28)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에 각각 1건씩 나타났다.
- 29) “成宗實錄”, 성종 1년 11월 26일 庚子條.
- 30) “明宗實錄”, 명종 8년 9월 17일 庚申條.

- 31) “成宗實錄”, 성종 6년 2월 24일 癸卯條.
- 32) “顯宗實錄”, 현종 3년 1월 16일 庚寅條 · 『顯宗改修實錄’, 현종 3년 1월 16일 庚寅條.
- 33) “成宗實錄”, 성종 2년 5월 9일 辛巳條.
- 34) “成宗實錄”, 성종 21년 윤 9월 1일 庚辰條.
- 35) “中宗實錄”, 중종 19년 2월 29일 甲子條.
- 36) “中宗實錄”, 중종 32년 11월 5일 庚辰條.
- 37) “英祖實錄”, 영조 3년 3월 9일 丙申條.
- 38) 중종 · 세조 2건 외.
- 39) 영조 · 정조 2건 외.
- 40) 광해군 · 현종 · 영조 때 1건씩 나타남.
- 41) “英祖實錄”, 영조 36년 4월 1일 乙亥條 · 영조 36년 6월 21일 癸巳條.
- 42) “世祖實錄”, 세조 7년 11월 5일 辛丑條.
- 43) “광해군 일기”, 광해군 15년 3월 12일 壬寅條.
- 44) “仁祖實錄”, 인조 25년 6월 15일 甲申條.
- 45) “純祖實錄”, 순조 3년 12월 16일 丁丑條.
- 46) 윤장섭(1973). 조선 건축. 대한건축학회지, 17(2). 59-60쪽.
- 47) “宣祖修整實錄”, 선조 25년 4월 1일 庚寅條.
- 48) 이경재(1983). 서울정도 육백년. 서울신문사. 45-47쪽.
- 49) 이경재. 앞의 책. 46-48쪽.
- 50) “仁祖實錄”, 인조 25년 6월 15일 甲申條.
- 51) 이경재. 앞의 책. 47-50쪽.
- 52) “純祖實錄”, 순조 33년 8월 2일 丙辰條.
- 53) “純祖實錄”, 순조 34년 4월 21일 丙辰條.
- 54) 이경재. 앞의 책. 50-52쪽.
- 55) 이경재. 앞의 책. 54-56쪽.
- 56) 이경재. 앞의 책. 55-57쪽.
- 57) 허균(1994). 서울의 고궁산책. 효림. 172-174쪽.
- 58) 이경재. 앞의 책. 63-67쪽.
- 59) “연산군 일기”, 연산군 11년 11월 18일 己亥條.
- 60) “연산군 일기”, 연산군 10년 8월 29일 丙戌條.
- 61) 경종실록에서 6건 · 경종개수실록에서 1건이 나타났다.

(接受 : 1999. 8. 31)